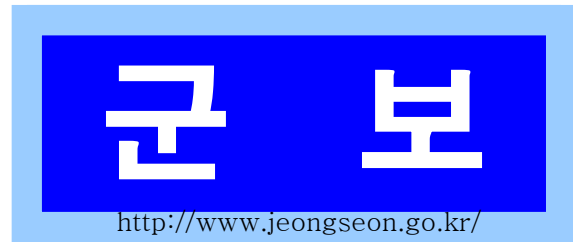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4호 2008. 12. 24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4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144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 정선군조례 제21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8
- 정선군조례 제2146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조례 제2147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정선군조례 제2148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13
- 정선군조례 제214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14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39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25
- 정선군규칙 제1140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32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8-121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52
- 정선군고시 제2008-123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5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8-740호 2009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모집공고.....54
- 정선군공고 제2008-741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57
- 정선군공고 제2008-744호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58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3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군 관리시설(도사곡 휴양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 을 신설함(제17조제1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4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운영방법)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 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개방시간은 연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욕구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제9조(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립한 공단이나 청소년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시설운영규정 또는 위탁약정규정 제정

2.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및 범위 결정
3. 기타 위탁시설 지도·감독사항 및 취소의 결정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청소년들의 수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규정)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회계)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하되,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정산보고) 정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및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및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자질향상과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정선군 동면 석곡리 381번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 청소년 동아리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활동 ○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

【별표2】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개인

(단위 : 원/1인1일)

구 분	초·중교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비고
계	2,500	3,500	4,500	5,000	
수련시설	1,500	2,000	2,500	3,000	
식당시설	1,000	1,500	2,000	2,000	

비고 1. 1일 : 12:00 ~ 다음날 12:00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3.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4. 초중교생, 고등학생, 대학생 : 수련시설 신청일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5. 일반인 :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20세 이상인자.

2. 적용요율

(단위 : 원/1인1일)

구 분	적 용 기 준	50명 이상	비 고
적용요율(%)	개인 1인 1일 사용료 기준	90/100	

개 정 이 유

-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설치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청소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규정함 (제2조)
-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4조)
-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 및 직접운영에 따른 방법을 규정함(제5조)
- 청소년시설의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제10조 및 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및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부칙 제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종교 등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제5조3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6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이장 사기양양에 필요한 각종 자율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장의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항목 구체적 명시 (제6조)
 - －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7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치로”를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원으로”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근로자의 인원”을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 동안의 평균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기업”이란 정선군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을 말한다.(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 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3년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9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3 및 제22조의”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로 한다.

제11조제목중 “이전비”를 “이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보조금”을 “이전보조금”으로,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2조 제목중 “산업입지보조금”을 “부지매입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산업개발단지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용지”로 한다.

②군수는 국내외투자기업이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용지를 정상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부지매입보조금은 개별입지를 매입 하는 용지비용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산업단지 용지 매입가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제2항중 “20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20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시설금액”을 “투자금액”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요금의 10퍼센트”를 “요금의 20퍼센트”로 하고,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분기별 최고 1백만원”을 “반기별 최고 5백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도권지역 등에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대한 지원)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서 1개기업이나 2개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시 이전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는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의 비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서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20조의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지방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4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신규고용 건당 최대 지원 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중 “국내외투자기업의”를 “국내외투자기업 등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 및 제2008-6호로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내 기업(지방기업)의 신규투자시 공용보조금 지원내용신설
 - 지원대상 :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제2조제7호)
 - 고용보조금 지원 : 일정 규모이상(5,000만원)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24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지원(제20조의3)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의 상시고용인원 완화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으로 완화
- 이전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제11조)
 - 건물 취득가액의 5% 범위내 최고 5억원 > 10% 최고 5억원
- 부지매입보조금 지원내용 신설(제12조)
 - 개별입지를 매입하는 용지비용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최고 5억원)
 - 산업단지 용지 매입가의 50% 범위 안에서(최고 3억원)
- 임대료 지원내용 신설(제12조의2)
 - 국내외투자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 입주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임대료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 범위내 최고 5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완화(안 제14조)
 - 상시고용인원 2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기업당 3억원까지)
 - > 1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기업당 3억원까지)
- 투자(시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안 제15조)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최고 3억원 > 10% 범위내 최고 5억원
- 물류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제16조)
 - > 20% 범위내 분기별 최고 5백만원까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조례 제2148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으로,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별표 4의 각호의 제목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4호 관련)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29)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48조)
 - 현행 6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별표 4)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확실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18층으로 완화하고, 여러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 19 .

정선군조례 제214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농업기계”란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임대농업기계를 임대받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할때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2. 농업기계의 운전·조작·정비기술교육
3.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담당)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소속 인원 중 담당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분야 정비기능사 2급 (특수장비 자격증 포함)이상 자격소지 유경험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임대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기준) ①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가당 1회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농업기계 사용기간은 출고한 날과 입고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③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다.

④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기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1년간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제7조(임대계약 및 출고) ① 농업기계 임대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보유 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후 출고한다.

② 관리요원은 신청 농업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기종 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2. 농업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출고일 이후 사용완료에 따른 조기 입고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④ 농업기계 임대료는 정선군 금고에 세입 조치한다.

제9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 ①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임대한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임대 농업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농업기계의 고장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농업인이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한 주의 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장비관리 및 수리) ①농업기계 임대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장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수리를 위한 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운영
2. 농업기계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3. 농업기계 입고시 작동상태 및 수량 확인
4. 농업기계의 점검·정비 및 구입확보 계획 수립

② 임대농업기계의 수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양도·대여금지) 임대한 농업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임대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정 선 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H·P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W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임대차 계약조건

1. 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하며 깨끗이 세척 후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농업기계의 분실·파손·고장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7. 임대농기계의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승인을 취소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임 차 인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반납확인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반 납	○ 조치사항 :		
		년 월 일 시	확인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	---

구 입 금 액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원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 요 특 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 페이지		

사 진	
임 대 농 기 계	관 리 번 호 명 판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입출 관리대장

()월

일자	보 유 기 중 별 현 황											
	“예”트 랙 터()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누계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휴대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임 대 료 납 부 액	원		감면(면제) 신 청 액	원
감면(면제) 신청 사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승인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휴 대 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감면(면제) 신 청 액	원		감면(면제) 승 인 액	원
감면(면제) 승 인 사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제 정 이 유

-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연중 사용 빈도가 높은 부착형 기계류를 구입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자가구입비 경감과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현장 농업기계 교육으로 사용법 숙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대여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임대대상자로 규정(제5조)
- 임대기준, 임대계약 및 출고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및 제7조)
- 임대료를 기종별로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제8조)
- 임대료의 반액면제, 전액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 농업기계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
-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금지 사항 규정(제13조)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규칙 제1139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대행업”이라 함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 ②“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

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를 이행 또는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공사시공 방법)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 ①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17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수책임) ①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 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배수시설공사 대행업 지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자 산	개인 : 10,000,000원(평가액) 법인 : 20,000,000원 (불입자본금)				
사 무 실 및 창 고	사무실 : 20㎡이상 창 고 : 10㎡이상				허가자명의소유 (상호표시)
전 화	1대 이상				
예 치 료	3,000,000원 이상				
구 분	기 준				
장비 및 공구류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엔진직결 양 수 기	50mm이상	대	1	개인 및 공동
	콘크리트 캣 타 기		대	1	
	함 마		대	1	
	체인 부력		개	1	
	콤팩트로라		대	1	

개 정 이 유

-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한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부 개정 2008.10.14.공포됨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대행업 지정 운영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가.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의 지정신청, 요건, 결격사유 및 지정기간, 지정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내지 제7조)
- 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보증금 3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 다.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공사시공 방법과 대행 업자에 대하여 조잡 시공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정지 및 재시공을 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치사항 등과 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내지 제11조)
- 라.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전까지는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으며, 하자 보수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하자발생시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마. 배수설비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 바. 대행업의 지정 요건의 변동이 있을 시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정서 또한 반납 후 재교부 받도록 규정.(제15조)
- 사.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및 보수책임 등에 대한 규정 마련.(제16조 내지 제18조)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2. 19.

정선군규칙 제1140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 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 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기타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내경 1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②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하수도사용료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2

⑥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써 요금의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가구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

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군수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 면제

나.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 면제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의 경우 : 면제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마. 2세대이하 거주하는 가구로서 하수배출을 위한 자가펌프시설을 설치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바. 조례 제7조에 따라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2.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면제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성명·반입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군수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수집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군수가 확인한 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제18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신고유형	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						
	사용년월일	년 월 일						
	배 출 량	생활하수	m ³ /인	사업장폐수	m ³ /인			
	급수실태	사용인구	인	연 건 평	m ²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중		월평균 사용량	m ³ /월	
	기 타 양수시설	유 형						
		규 격						
대 수								
구 경								
양수능력								
기 타 참고사항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양수능력	m³/h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m³		월간 m³		
	비 고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감 수 량	제품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수량(m ³) (비율%)	물사용량 (m ³)	기타감수량 (m ³)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m ³)		감수량(m ³)		하수배출량(m ³)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양 태 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역	공사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공공하수도의복구방법					
	사 용 수					
	배 출 량	일평균		m ³	월평균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역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구조)					
	공 사 기 간	착 공				
		준 공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한
						14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						
공사내용						
급수시설	구 경	m/m	모터펌프	대	기 타	
배 출 량	생활하수	m³/일	사업장폐수	m³/일	기 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 사 종 별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						
공 사 비				납부일자		
취 하 사 유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 오 납 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환 불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당후의 미 납 액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표 1] (제8조 관련)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내경)				
구 경 (m/m)	최대출수량 (m³/분)	표준출수량 (m³/분)	시 간 당 출 수 량	
			최대 m³/hr	표준 m³/hr
20	0.03	0.025	1.80	1.5
25	0.06	0.05	3.60	3
32	0.10	0.08	6	4.80
38	0.15	0.13	9	7.80
50	0.26	0.20	15.60	12
65	0.45	0.30 ~ 0.40	27	18 ~ 24
75	0.62	0.50 ~ 0.53	37.20	30 ~ 31.80
100	1.20	0.85 ~ 1.10	72	51 ~ 66
125	1.90	1.40 ~ 1.70	114	84 ~ 102
150	2.70	2.40 ~ 2.60	162	126 ~ 156
175	3.80	3.30	228	198
200	5	4 ~ 4.30	300	240 ~ 258
250	8	6 ~ 7.50	480	360 ~ 450
300	12	9 ~ 11	720	540 ~ 660
350	16	14	960	840
400	21	17 ~ 20	1,260	1,020 ~ 1,200
450	27	25	1,620	1,500
500	33	30	1,980	1,800

개 정 이 유

-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한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부개정 2008. 10. 14.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 이 정비·규정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조)
-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청, 공사신청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내지 제6조)
- 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정함(제7조)
- 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급수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 및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방법
- 설치된 계측기의 이상이 있을 때 처리방법 및 사용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각종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체납시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
- 하수도사용료의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시 처리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및 환불 청구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5조)
-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 대상 및 감면 신청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6조)
- 하수도사용료 징수의 타 회계 위탁 징수(제18조)
- 종전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부칙 제2조)

정선군고시 제2008-121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정선군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제165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16.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86,122,590	247,823,514	38,299,076	15.45%
일반회계	251,096,603	216,681,345	34,415,258	15.88%
기타특별회계	25,301,953	21,254,494	4,047,459	19.04%
의료급여기금	541,805	585,631	△43,826	△7.48%
정선군임대아파트운영	923,325	1,103,759	△180,434	△16.35%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58,781	83,370	△24,589	△29.49%
기반시설부담금	612,042	1,013,000	△400,958	△39.58%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00,000	503,900	96,100	19.07%
주택사업	230,000	229,600	400	0.17%
주차장	850,360	637,760	212,600	33.34%
수질개선	21,485,640	17,097,474	4,388,166	25.67%
상수도사업(공기업)	9,724,034	9,887,675	△163,641	△1.65%

정선군고시 제2008-123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65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2.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17,153,184	306,476,271	10,676,913	3.48%
일반회계	282,721,348	273,440,392	9,280,956	3.39%
기타특별회계	21,930,130	20,989,118	941,012	4.48%
의료급여기금	611,019	569,757	41,262	7.24%
정선군임대아파트운영	1,145,859	1,145,859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85,581	85,581	0	0.00%
기반시설부담금	557,942	557,942	0	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4,013	504,013	0	0.00%
주택사업	331,073	331,073	0	0.00%
주차장	857,006	857,006	0	0.00%
수질개선	17,837,637	16,937,887	899,750	5.31%
상수도사업(공기업)	12,501,706	12,046,761	454,945	3.78%

정선군공고 제2008-740호

**- 2009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모집공고**

2009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2. 19.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포함)선발 예정 인원 : 110명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 65세 이하인 자(남·여)

가.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

나.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우대

라.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구직등록 - 노동부 고용지원)

마.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세대 2인 이상, 대학(대학원생 포함)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산림에서 기계장비 사용 및 위험이 따르는 작업임을 고려하여 청각, 간질, 작업 도구 사용 등에 장애가 있는 자

바. 다만,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허용

- 2008년이전 졸업자 및 200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0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참여자격 배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여 가능

3.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① 사업 신청서(접수장소 및 게시판 첨부)1부-신청서는 공란없이 기재
-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cm× 4.5cm)사진1매
- ③ 본인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각각 사본
- ④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산림분야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나. 접수기간 : 2008년 12월 22일 ~ 2009년 01월05일까지(09일)

※ 토,일요일 등 휴일 제외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09년 01월 09일(개인별 통보)

※ 선발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및 시에서 별도 정한 선발기준에 따름

4.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0월말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정선군 일원

다. 사업내용

-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 산림내에서 숲아베기(간벌),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 및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기타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공공성 산림사업실행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일반인부 : 1일/40,000원

나. 기술인부 : 1일/45,000원(인부임 40,000원+기술수당 5,000원)

- 기술인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관련자격증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소지자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월 ~ 금요일(또는 토요일)개근 시 주/1일 유급휴일 부여

라.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부여

마. 1일 기준 부대경비 5,000원 지급(교통비 2,000원, 간식비 3,000원)

※ 근무일에 한함

바.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조치되며, 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사. 임업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숙박교육으로 교육기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6.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전화: 033-560-242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741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9.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강 효 덕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우성아파트 103동 1601호
소 하 천 명		금방동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8-30천,-32천,-33천(1번지선)		
	면 적	A = 2,487㎡ (농경지: 851, 진출입로: 1,636)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12월 19일 ~ 2010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 및 진출입로 사용		
기타: 소하천 점·사용 허가번호 제2008 - 46호 (2008년 12월 19일 허가처리됨)				

정선군공고 제2008-7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2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23.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12. 23. ~ 2009. 01. 05.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신국선 (600404-1*****)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4동 246-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위반 - 정선군 남면 유평리 497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예고 (금 사백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6. 이의신청	기관명	정선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김방주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 033-560-2241 FAX : 033-560-2307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033-560-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